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3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전현희·윤종군·추미애

김영환 · 문진석 · 이학영

박정현 • 황운하 • 홍기원

강준현 • 이훈기 • 황정아

정준호 · 남인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,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· 매수 신고,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,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,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· 신청 ·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신고 · 신청 · 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,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·신청·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·신청·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 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,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(안 제25조제2항 삭제, 제2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5조의2(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·신청·제출) ① 이 법에 따라 신고·신청·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(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·신청·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한다. 이 경우해당 소속기관장은 이 법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에 따른 신고·신청·제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·신청·제출시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 계획 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·신청·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이첩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치는 제19조를 준용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5조(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 제25조(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 정) ① (생략) 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 <삭 제> 게 신고・신청・제출하여야 하 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· 신청 · 제 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. <신 설> 제25조의2(소속기관장의 이해충 돌 관련 신고・신청・제출) ① 이 법에 따라 신고·신청·제 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 관장(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장 은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· 신청 · 제출을 국민권익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은 이 법 제5 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에 따른 신고 · 신청 · 제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・신청・ 제출시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

- 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의
 신고·신청·제출 및 제2항에
 따른 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
 해당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
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
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소
 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
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.
-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한다.
- ⑥
 제5항에
 따른
 이첩에
 대한

 조사기관의
 조치는
 제19조를

 준용한다.